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자치단체에'를 '충청북도에'로 한다.

제5조제1호중 '세입세출외현금구좌(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설치)에'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영관은 내무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2조 (용어의 정의) (생략)</p> <p>1.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u>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u></p> <p>2. (생략)</p> <p>3. (생략)</p> <p>제5조 (기금의 관리)</p> <p>1. 기금은 <u>세입세출외현금구좌(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설치)에</u> 납입, 관리한다.</p> <p>2. (생략)</p> <p>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u>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 명령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문화예술계장으로 한다.</u></p>	<p>제2조 (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 -----충청북도에----- -----</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 (기금의 관리)</p> <p>1. - - <u>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u> <u>에</u> - -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u>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내무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계장으로 한다.</u></p>